

부천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2월 26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10년 2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0년 3월 1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정보통신과장 이광택)

□ 제안이유

-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9. 5. 22. 공포·2009. 8. 23.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 지역정보화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함.(안 제명)
-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천시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지역정보화의 추진(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원칙과 기본방향,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및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웹사이트 접근성의 보장과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없	음

4. 토론요지

- 가. 반대토론 : 없음
- 나. 찬성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부천시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부천시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부천시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

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부천시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정보화부서의 국장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정보화업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총무국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

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부천시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

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천시 정보화 촉진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62호
의결 년월일	2010. 3. 19 (제159회)

제출년월일 : 2010. 2. 2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9. 5. 22. 공포·2009. 8. 23.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 지역정보화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함.(안 제명)

나.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천시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지역정보화의 추진(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원칙과 기본방향,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및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웹사이트 접근성의 보장과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첨 부:** 부천시 정보화촉진 조례

부천시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부천시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 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부천시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부천시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

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부천시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정보화부서의 국장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정보화업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총무국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부천시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천시 정보화촉진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부천시 정보화촉진 조례

- [1998. 04. 01 조례 제1563호]
- [2000. 05. 24 조례 제1754호]
- [2004. 01. 15 조례 제1997호]
- [2007. 02. 12 조례 제221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화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망을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말한다.
2. 삭제
3. “주관부서”라 함은 시·구·사업소의 단위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시장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5.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라 함은 기존 업무의 흐름을 관찰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업무흐름을 재구성하여 정보화에 맞도록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료”라 함은 컴퓨터 및 관련기기의 사용대가 또는 전산정보자료를 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등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 매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7. “정보격차”라 함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시의 경쟁력 강화
2. 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4.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의 수립·시행
5. 장애인·노령자 등 정보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정보화 시책의 수립·시행
6.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회·정보문화축제 등의 개최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4조(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각 부문별 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업
4.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등에 관한 사항
6.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7. 정보화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정보화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9. 정보화통신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1.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장은 주요시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년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부천시정보화추진협의회 심의를 받아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1월중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역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①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 도지사 및 협의하여 도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의 시행계획중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제6조(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설치)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최고정보책임자(CIO)인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③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언론계 또는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시의회 의원·IT 분야별 전문가 및 지역정보화업무담당국장 등으로 시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추진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추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추진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보화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업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정기회는 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협의회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의2(소 협의회) ①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소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 협의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 협의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위원 및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역정보센터

제13조(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①시장은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등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시장은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정보센터의 사무소 설치 및 운영관리) ①정보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 및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②시민에게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시에서 운영 관리하며 관리자는 정보화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지역정보센터의 사업) 지역정보센터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보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진흥활동
2.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서비스에 필요한 업무
3.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사·연구 및 용역사업 또는 전산처리업무
4. 정보화를 위한 홍보, 계몽 및 교육활동
5. 정보화 학술연구 및 관련지원 활동
6. 기타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6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제19조(원시자료) ①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수합은 업무 주관부서에서 한다.

②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은 정보화업무 담당과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전산정보관리) ①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시장, 구청장 또는 동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산화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1조(전산정보자료등의 제공) ①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당해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주관부서장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업무담당과장은 인터넷이나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공자료에 대한 항목을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등) 시장은 제21조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자료를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제23조(업무정보화·표준화) ①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

②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업무를 정보화 할 경우에는 업무의 타당성조사, 업무처리절차의 재구성, 시스템 분석 및 표준화 기법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천시 정보화촉진 표준화 규정」에 의거 사전에 정보화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인력과 예산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화 용역) ①시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 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하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는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작업단을 편성하여 정보화용역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25조(저작권 등록)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8장 정보시스템 운영

제26조(정보시스템 도입 설치)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천시 정보화촉진 표준화 규정」에 의거하여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단말장치 설치운영) ①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업무담당과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화업무담당과장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 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

요예산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8조(수탁업무처리) ①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처리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2.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②시장은 타 시·군·구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유지보수) 시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정보망, 통신장비등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제9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제30조(보안관리) ①시장은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정보화업무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업무담당과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시켜야 한다.

제31조(정보보호)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처리정보의 열람 및 정정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4.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5. 기타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제32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①정보화업무담당과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보관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보험) 시장은 정보화업무담당부서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제34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일반직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6.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교육시설 및 장비확보)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 및 이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상설교육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설교육장에는 교육에 필요한 관련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등)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방안
2.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3. 기타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시장은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는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인 정보화 활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주민의 정보화교육) ①시장은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노령자 등 정보이용이 어려운 계층에게 전산장비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된 장비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0. 05. 24 조례 제17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4. 01. 15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02. 12. 조례 제2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